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86
----------	-------

발의연월일 : 2025. 9. 15.

발 의 자 : 정준호 · 조계원 · 이연희
양부남 · 백선희 · 박용갑
임호선 · 복기왕 · 이소영
한준호 · 정진욱 · 염태영
안태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서울, 경기도, 울산 울주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지급 등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를 보유한 7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시장등이 그 사람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비 지급, 교통수단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사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사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38조의2제3항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75세 이상인 사람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사람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비 지급, 교통수단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의 절차·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95조의2에 따라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5조의2(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75세 이상인 사람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다.</u> <u>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사람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비 지급, 교통수단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의 절차·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95조의2에 따라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u>

수 있다.